

예수대학교 동문회 시행세칙

2025.5.30 개정

제1조(목적) 동문회 회칙에 따른 시행세칙을 정하여 원활하고 정확하게 동문회 운영을 하기 위함이다.

제2조(회원입회) 회원입회는 예수대학교 학부 졸업 또는 대학원 수료를 앞둔 자로서 소정의 입회비를 내고 입회한다(2025.5.30).

제3조(입회비) 회원입회비는 3만원으로 한다(2025.5.30. 다시 신설)

제4조(회원) 회원이 평생회비를 납부하면 평생회원이 되고 년 회비를 납부하면 일반회원이 된다.

제5조(경조비)

① 회비완납 자에 한하여 회원 애사 시에는 일반미 년 초 정부 고시가 80kg을 기준으로 하며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2023.5.26개정).

② 회비완납자에 한하여 회원이 기관의 장 또는 담당간호부서의 최고 책임자로 추대되는 경우 일반미 년 초 20kg을 기준으로 하며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2023.5.26개정).

제6조(재정) 재정은 다음 사항을 회계 2인이 각각 담당한다.

① 경상비 - 제1회계(2015년.5.29개정)

② 평생회비, 이사회비 - 제2회계(2015년.5.29개정)

제7조(기금관리) 평생회비, 장학기금, 특별기금 등은 따로 정한 내규에 의해 관리한다.

제8조(보관장부)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보관한다.

1. 회칙 및 시행세칙
2. 회원명부
3. 현금 출납부
4. 특별기금 및 찬조금 대장
5. 예금통장
6. 회의록
7. 기타 필요한 장부

부 칙

1. 본 시행세칙은 1994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시행세칙은 2008년 5월30일부터 시행한다.
3. 본 시행세칙은 2014년 5월30일부터 시행한다.
4. 본 시행세칙은 2015년 5월29일부터 시행한다.
5. 본 시행세칙은 2019년 5월3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시행세칙은 2023년 5월26일부터 시행한다.
7. 본 시행세칙은 2025년 5월30일부터 시행한다.